

제 1 호

발행일 : 1992. 10. 5.

# 숭실철학

발행처 : 숭실철학동문회

발행인 : 박 근 용

## ### 동문회장인사말

친애하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 말씀 올리게 되어 한 편으로는 송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 숭실대학교 철학과에서 우리의 인격을 수련하고 학문을 연마한 후, 사회 각계 각종에서 국가와 민족,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느라 노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아야 할 철학과 동문회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몇 사람의 뜻 있는 동문들의 노력으로 1991년 11월 16일 드디어 재건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 동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모교 숭실은 앞으로 5년 후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숭실이 재건된지도 벌써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가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결코 만족스러운 상태에 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흩어져 제각기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힘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철학과 발전에 투입한다면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번에 모교 개교 95주년 개교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 동문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입니다. 선후배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상호간에 그동안 회포도 풀면서 모교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임에 참석해 주신 동문들께 특히 감사드리는 동시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에게도 연락하여 함께 숭실철학동문의 발전을 염려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10월 5일

숭실철학동문회장 박 근 용

## ### 동문회 임원진

지난 1991년 11월 16일 모교에서 열린 재건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진이 구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장 : 박 근 용

부회장 : 김 기 순, 류 순 하

    박 종 순, 최 기 만

    하 해 통, 장 재 덕

    최 중 일, 박 달 진

홍정길, 이종윤  
이용남, 홍진일  
총무 : 황화자  
간사 : 곽신환, 김승국  
고문 : 조요한, 안병욱  
최명관, 고범서  
간사 : 윤은주

### ### 동문회 경과보고

지난 1991년 3월 27일 모교에서 열린 허원 최명관 교수님의 고별강연회 후 가진 모임에서 숭실철학동문회를 재건 키로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이 동문회 활동이 진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91. 3.27. 동문회 재건준비위원회

- \* 모교 과학관 대회의실
- \* ① 동문회 재건 및 연내 재건총회 개최

② 재건준비위원장 장덕수 동문,  
총무에 이반 동문 선임

1991.11. 2. 재건총회준비모임

- \* 모교 사회봉사관 식당
- \* ① 동문회회칙안 작성
- ② 재건총회개최일 확정

1991.11.16. 재건총회

- \* 모교 과학관 교수식당
- \* ① 회칙 통과후 임원 선거
- ② 기타 임원, 이사진 선출은 회장, 총무, 김기순 동문께 위임

1991.12.11. 위임진을 위한 모임

- \* 서울 장신 학장실
- \* ① 임원 및 이사진 추대
- ② 92년 신년하례식 계획
- ③ 연회비 결정

1992. 1. 9. 신년하례식 및 임시회의

- \* 모교 사회봉사관 식당
- \* ① 임원 및 이사진 승인

- ② 모교 학부 전학년에 걸쳐 성적우수자 1명에게 장학금 지급  
1992. 6.11. 이명수 동문 박사학위 취득 축하회
- \* 모교 사회봉사관 식당
  - 1992.10. 5. 숭실철학동문회 전체모임
  - \* 모교 사회봉사관 관악산홀 및 식당

### ### 장학금 모금

숭실철학동문회에서는 모교의 질적 발전을 위해 후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작은 뜻이나마 모인다면 모교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선배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은행 029-01-0321-872 숭청동문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간사 윤은주(820-0304) 또는 철학과 사무실(820-0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문소식

모교출신 동문 네 분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일(82년卒)

“의미론과 실재론-반실재론 논쟁”,

90.2. 숭실대학교

이명수(68년卒)

“한국 가면극에 대한 미학적 연구-  
극요소의 기호론적 분석”, 92.2. 숭실  
대학교

정 세 근(80학번)

“장자의 기학론”, 92.6. 국립대만  
대학교 철학연구소

홍 성 하(77학번)

“기억의 현상학”, 92.7. Freiburg 대  
학

### ### 모교 소식

모교 철학과는 89년 학회에서 학생회로 전환하면서 학과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92년 학회연합을 결성하여 과 내의 학문적 욕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기본적 사업을 보면, 신입생 환영 모꼬지, 석죽제, 초성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992년 한 해의 학과 사업을 실어 모교 후배들의 활동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학기>

- 2월 신입생 Orientation
- 3월 신입생 교양강좌실시
- 4월 철학과 전체모꼬지(M.T)
- 5월 ‘스승의 날’ 기념행사
- 제 17회 석죽제
- 7월 농촌활동

#### <2학기>

- 9월 제 1회 초성제
- ‘92 중실대동제(철학서적 및 기타 서적 주제별 전시회)
- 11월 2학기 정기총회 및 학생회장 선거
- 12월 졸업생 학술회

\* 석죽제 : 철·사학과 양과 화합의 장인 석죽제가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했

습니다. 17회 석죽제에서는 ‘현 시기 맑시즘의 위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강연회를 가졌으며, 2부 행사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석죽인의 하나되는 단결의장을 연출하였습니다.

\* 초성제 : 올해 첫회를 맞이하는 초성제는 철학도의 학문·사상·생활에 관한 철학인들의 대동의 자리입니다. 연이틀에 걸쳐 진행된 초성제는 첫날 학회연합 주최로 ‘종교’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가 열렸으며, 둘째날은 강사님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듣는 자리와 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 ### 중실철학동문회 회칙

#### 중실대 철학과 동문회(초안)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중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이하 본 회)라 부른다.

제 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2. 모교 철학과의 발전에 기여

제 3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2 장 회 원

제 4조(구분)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교 철학과 졸업생과 대학원 철학과 석·박사과정 수료 및 이수자

2. 준회원은 전향의 각 과정에 재

적하였던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특별회원은 모교 철학과의 전임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모교 철학과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에 준한 권리를 갖는다.

3. 특별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제 7조(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 및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단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 제 3 장 기구 및 권한

제 8조(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임원회
4. 임시 위원회
5. 동기 대표회

제 9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정책심의, 의결기관으로서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임원의 선출, 회칙 개정, 예산 결산의 심의 확정,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2. 위의 사항을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0조(이사회) 이사회는 제 4장이

정하는 임원 및 이사, 고문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이 이사회에 참석한다.

1.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준회원의 승인과 특별회원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

3. 회칙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회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회장이 附議한 사항의 의결

4. 임시 위원회를 12조에 따라 구성

5. 위의 6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제 11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단과 총무, 간사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총회 및 이사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 12조(임시 위원회) 임시 위원회는 본 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임명하는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 13조(동기 대표회) 동기 대표회는 입학 또는 졸업 년도별 동기 모임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최고 동기 대표로 하고 필요시 의장 또는 동기 대표 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제 4 장 조직

제 14조(임원의 조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의 조직을 갖는다.

1. 임원의 조직 및 의무

가. 회장(1명)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5명이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졸업 연도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다. 총무(1명) : 회장의 지휘하에 회무를 총괄한다.

라. 감사(2명) :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마. 간사(2명) : 회장의 지휘하에 본회의 제반 업무를 보조한다.

## 2.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정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3.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이사의 조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의 조직을 갖는다.

1. 이사는 전체 회원의 20분의 1 이내의 수로 구성하며, 제 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2.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조(고문)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둔다.

1. 고문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고문은 이사회의 추대에 의해 선출한다.

3. 고문은 영구적으로 한다.

## 제 5 장 회 의

제 17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0월 중에 실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19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이사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20조(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제 6 장 동 기 회

제 21조(동기회) 본 회는 입학 또는 졸업 연도별 동기로 구성된 동기회를 조직할 수 있다. 동기회 및 집행진의 구성과 재구성이 된 때에는 즉시 본 회에 통보, 등록해야 한다.

## 제 7 장 재 정

제 2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 23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로 이루어지며 액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 제 8 장 의 결 정 족 수

제 25조(결의) 임원 선임 및 안건의 결의는 회의 참석 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26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총회의 의결로 하며, 개정안의 의결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를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하되 차기 총회의 주인을 받아야 한다.

## 제 9 장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제전 총회(1991.11.16)에서의 통과 즉시 효력

을 발생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 ###동문회 92년도 결산보고

1992년 9월 현재  
(+ : 수입, - : 지출)

年月	내 역	금 액
91.11.	준비위이월금	+10,000
	재건총회비	+75,000
	모교방문의날 경비찬조금	-50,000
92. 1.	신년하례식회비	+390,000
	하례식 경비	-195,400
. 2.	연회비	+200,000
	지출	-62,200
. 3.	문구	-1,200
	연회비	+200,000
. 4.	간사활동비	-100,000
	문구	-3,800
. 5.	은행이자	+487
. 6.	행사회비	+120,000
	행사비	-207,800
	연회비	+50,000

간사활동비	-100,000
. 8. 연회비	+50,000
. 9. 연회비	+100,000
행사비	-63,800
총 수입액	1,195,487
총 지출액	784,200
잔 액	411,287

### ### 광고 한 말씀

충실철학동문회에서는 동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실철학」이 충실철학동문들의 소식지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문들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동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소식들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충실철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충실철학인들을 하나로 묶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문들의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문행사의 연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동문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철학과 사무실

820 - 0370

철학과 학생회실

820 - 0944

FAX(인문대학사무실 내)

824 - 4382